

2019 특별총회 검토 중인 입법안

승인된 변경 사항은 4월에 사법위원회에서 재검토되었다.

합헌성에 관련된 내용은 사법위원회 결정 [1377](#)과 [1366](#)에 근거한다.

편집된 자료는 입법안 추적 웹 사이트에서 공개적으로 사용 가능하다. 새로운 단어들은 밑줄이 그어져 있다.

교단의 공식 언어는 나중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통주의 플랜 # 1 - ¶. 304.3 각주 1에 목회자의 자격 - (청원서 90032)

요약 : "스스로 동성애 관계에 있다고 밝힌 사람"의 정의를 확장.

합헌

총회 전에 제출:

현 장정 ¶ 304.3의 각주 1에 내용을 추가함으로 수정:
 “스스로 동성애 관계에 있다고 밝힌 사람이란 감독,
 감리사, 지방안수위원회 또는 연회안수사역부 앞에서,
 또는 연회 비공개 교역자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자기가
 동성애 관계에 있다고 인정한 사람, 동성 결혼 관계에
 있는 사람 그리고 동성애 관계에 있다고 스스로 밝힌
 사람을 뜻한다” 사법위원회의 판정 702, 708, 722, 725,
 764, 844, 984, 1020, 1341 참조.

총회에서 승인:

수정되지 않음

전통주의 플랜 #2 – 감독의 의무 - ¶. 408.3 (청원서 90033)

요약: 감독의 강제 은퇴 – 투표 절차의 수정과 투표권이 없는 회원을 명시

위헌 – 공정하고 적법적 절차에 대한 감독의 권리에 관련된 헌법 ¶¶ 20과 58을 위반

총회 전에 제출:

¶ 408.3.c를 추가함으로 수정:
 총감독회의에 참석한 사람의 과반수 투표에 따라서,
 총감독회는 만약 총감독회 협력위원회가 추천했다면 어떤
 감독이라도 동의하건 동의 하지 않든 간에 나이에 상관없이
 은퇴할 수 있게 한다. 어떤 강제 은퇴 절차(¶ 422.5)라도 행정
 청문회의 공정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서면 통지는
 행정심의위원회 위원장(¶ 422.6)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총회에서 승인:

청원서는 다음과 같이 수정:
 ...나이에 상관없이 은퇴할 수 있게 한다. 총감독
협력위원회와 행정심의위원회는 이 사안에 대해 투표할 수
 없다. 어떤 강제 은퇴 절차(¶ 422.5)라도...

전통주의 플랜#3 – 감독의 의무 - ¶. 410 (청원서 90034)

요약: 감독을 위한 새로운 강제 휴직 범주를 형성

위헌 - 공정하고 적법적 절차에 대한 감독의 권리에 관련된 헌법 111 20과 58을 위반

총회 전에 제출:

¶ 410.5 추가함으로 수정:

a) ¶ 410.5 총감독회의에 참석한 사람의 과반수 투표에 따라서, 총감독회는 만약 총감독회 협력위원회가 추천했다면 어떤 감독이라도 강제 휴직하게 할 수 있게 한다. 어떤 강제 휴직 절차(¶ 422.5)라도 행정 청문회의 공정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서면 통지는 행정심의위원회 위원장(¶ 422.6)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b) 강제 휴직은 총감독회 협력위원회의 검토와 권고 후에 총감독회에서 매년 승인되어야 한다.

c) 휴직 기간 감독은 모든 감독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으며 동료 감독들에 의해 선택된 다른 감독이 그 감독구를 주재한다. 사례비와 기타 혜택은 감독 기금을 통해 최대 6개월 동안 지속할 수 있습니다.

총회에서 승인:

¶ 410.5에 아래가 추가:

b) 강제 휴직은 총감독회 협력위원회의 검토와 권고 후에 총감독회에서 매년 승인되어야 한다. 총감독 협력위원회와 행정검토위원회는 이 문제에 대해 투표할 수 없다.

전통주의 플랜#4 - 감독의 의무 - ¶. 422 (청원서 90035)

요약 : 감독의 강제 휴직이나 은퇴를 권고하는 새로운 위원회를 창설함

위헌 - 공정하고 적법적 절차에 대한 감독의 권리에 관련된 헌법 111 20과 58을 위반

총회 전에 제출:

¶ 422에 추가함으로 수정:

¶ 422.2. 그러므로 총감독회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를 통하여 세계를 향하는 감독 지도체제의 집단적 표현이다. 교회는 총감독회가 교회를 향하여 발언하고 또한 교회를 통하여 세계를 향하여 발언할 것을 기도하며, 교회 통합을 모색하고 초교파적인 관계를 수립하는데 있어 지도력을 발휘하여 줄 것을 또한 바라고 있다. 총감독회는 또한 일반적인 감독관으로서 그리고 감독구에 주재감독과 연회장으로서의 개개인 회원이 감독직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기관이다.

¶ 422.5. “총감독회나 혹은 7명의 현직 감독들에 의해서 제기된 강제 은퇴와 강제 휴직에 대한 요청을 듣기 위해서

총회에서 승인:

¶ 422.5 에 아래 문장이 추가:

총감독회나 혹은 7명의 현직 감독들에 의해서 제기된 강제 은퇴와 강제 휴직에 대한 요청을 듣기 위해서 총감독회 내에서 3명의 감독을 세워 총감독회 협력위원회를 설립한다. 총감독 협력위원회와 행정검토위원회는 강제 은퇴와 강제 휴직을 위한 위탁에 대해 투표할 수 없다.

총감독회 내에서 3명의 감독을 세워 총감독회 협력위원회를 설립한다.

a) 강제 은퇴나 휴직이나 총감독회 협력위원회에서 권고되었을 때, 총감독회 협력위원회는 공정한 절차의 규정에 따라 행정부 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 총감독회는 협력위원회에 권고안을 제출할 사람을 지명한다. 피항소인은 직접, 서면으로, 그리고 정회원 목회자의 도움을 받아 권고 사항에 대해 언급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출한 사람, 피항소인, 그리고 위원장에 의해 결정된 다른 사람들과 심리를 열게 되면, 위원회는 총감독회의에 그 결정을 보고해야 한다. 총감독회의는 위원회의 결정을 동의하거나 반대할 수 있다. 총감독회는 스스로 동성애를 한다고 공언하는 사람에 대해 규정하는 장정을 옹호, 실행, 그리고 지지한다고 증명하기를 꺼려하는 어떠한 감독이라도 총감독회 협력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 총감독회 협력위원회가 감독이 그렇게 증명하지 않았다는 확실한 결론을 얻었을 때, 총감독회 협력위원회는 공정한 청문회를 거친 후 강제 휴직이나 강제 은퇴를 총감독회에 권고해야 한다.

b) 공정한 청문회 - 연합감리교회의 회원 및 조직 내에 존재하는 거룩한 계약의 일부로서, 행정부 청문회에서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교회를 보호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절차가 제시된다. 총감독회 협력위원회가 총감독회의 행정적 요청을 처리하기 위해 만날 때마다 본 단락에 설명된 절차를 따라야 한다.

1) 모든 행정 절차에서 총감독회의 대표와 피고인(강제적 제재를 당하는 사람)은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발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2) 심문회에 관한 통지는 본인이 충분히 답변을 준비할 수 있도록, 심문회를 열게 된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 통지서는 심문회 개최 20일 이전에 통보를 해야 한다.

3) 피고인은 장정의 규정에 의하여 어떤 심문회에도 정회원 목회자를 대동할 권리가 있다. 피고인을 대동하는 목회자는 발언권이 있다.

4) 어떠한 행정 심문회에서도 한쪽이 다른 한쪽이 부재한 상황에서 본질적인 문제에 관하여 심문회위원들과 결코 논의하여서는 안 된다. 절차상의 문제에 관해서는 심문회

<p>위원장에게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p> <p>5) 피고인은 적어도 심문회가 열리기 7일 전에 공청회 최소 7일 전에 행정적 절차를 밟게 된 모든 근거 서류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p> <p>6) 피고인 감리를 위한 상담에 참석하지 않거나, 우편 접수를 거절하거나, 감독과 개인적으로 의사소통하기를 거부하거나, 또는 감독의 요청이나 공식적인 행정위원회의 요청에 불응할 경우, 그러한 행위는 교회의 처리 절차를 기피하거나 지연시키는 근거가 되어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절차는 본인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해 나가야 한다.</p> <p>¶ 422.6 총감독회는 감독협력위원회 혹은 실행위원회의 회원이 아닌 감독 중에서 적어도 3명으로 구성된 행정재검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이 위원회의 단 한 가지 목적은 감독협력위원회가 추천한 강제성을 띤 모든 결정을 적절한 절차를 따라 시행되도록 하는 것이다. 감독의 지위에 어떤 변화를 초래하는 모든 행정적 조치 과정을 행정재검위원회는 다시 검토해야 하며, 그 결과를 총감독회가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총감독회에 보고해야 한다. 행정재검위원회는 행정적 처리 과정과 연관된 모든 당사자에게도 보고해야 한다. 행정재검위원회는 공정한 심문회 절차(¶ 422.5)를 따라야 한다. 보고하기 전에 행정재검위원회가 절차상 오류가 있었다고 판단하면, 관계된 이들이나 위원회에 곧 연락하여 수정하도록 요구하거나, 오류는 상관없다고 하거나, 기타 다른 행동을 취할 것을 권고 할 수 있다.</p>	
---	--

전통주의 플랜 #5 – 감독의 책임- ¶. 415.6 (청원서 90036)
요약: 감독이 스스로 동성애 관계에 있다고 공언한 자에게 파송이나 안수하는 것을 금지함
합헌

<p>총회 전에 제출:</p> <p>¶ 415.6 에 추가함으로 수정: 감독들을 성별하며, 장로 목사와 집사 목사들에게 안수를 주며, 평신도 사역자들을 성별하며, 디크네스들과 국내 선교사들과 해외 선교사들에게 임무를 위임하며, 성별되고 위임받은 이들의 이름이 연회록에 제대로 기록되어 있는지, 또는 이들에게 적절한 위임장이 수여되었는지 확인하는 책임이 있다.</p> <p><u>감독은 적절한 절차를 걸쳐 지역총회나 해외지역총회에서 선출되었어도 스스로 동성애 관계에 있다고 밝힌 사람을 감독으로 성별하지 말아야 한다. 감독은 후보자가 연회안수사역부에서 결정되었어도 스스로 동성애 관계에 있다고 밝힌 후보자(장로와 집사 목사)이거나, 연회 비공개 교역자 회의에서 승인을 받았더라도, 장정이 요구하는 규정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파송을 금해야 한다. 감독은 연회안수사역부에서 결정되었어도 스스로 동성애 관계에 있다고 밝힌 안수 후보자이거나, 연회 비공개 교역자 회의에서 승인을 받았더라도, 장정이 요구하는 규정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집사 목사나 장로 목사로 안수하는 것을 금해야 한다..</u></p>	<p>총회에서 승인:</p> <p>수정되지 않음</p>
--	---------------------------------------

전통주의 플랜 #6 - 연회안수사역부의 구성 - ¶. 635.1a (청원서 90037)

요약: 연회안수사역부 회원이 장정을 고수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을 요구

위헌 - 합법의 원칙을 위배

<p>총회 전에 제출:</p> <p>¶ 635.1.a에 추가함으로 수정: 연회안수사역부 회원은 주재감독이 본 사역부의 회장, 실행위원회 혹은 4년 전에 선출된 위원회 그리고 감리사들과 상의한 후에 추천된다. 감독에 의해 연회안수사역부 회원으로 추천되기에 앞서 모든 개인은 스스로 동성애 관계에 있다고 밝힌 사람의 파송, 안수 그리고 결혼에 관련된 장정을 옹호, 실행, 그리고 지지할 것을 증명해야 한다. 추가로 감독은 스스로 동성애 관계에 있다고 밝힌 사람의 파송, 안수 그리고 결혼에 관련된 장정을 옹호, 실행, 그리고 지지할 것을 증명한 사람만을 추천할 것을 증명해야 한다. 사역부의 적절한 회원을 확보하기 위해서...</p>	<p>총회에서 승인:</p> <p>¶ 635.1.a에 추가함으로 수정: 연회안수사역부 회원은 주재감독이 본 사역부의 회장, 실행위원회 혹은 4년 전에 선출된 위원회 그리고 감리사들과 상의한 후에 추천된다. 감독에 의해 연회안수사역부 회원으로 추천되기에 앞서 모든 사람이 안수를 위한 모든 자격(¶¶304, 330, 335, 336)에만 제한되지 않는 장정 전체를 옹호, 실행, 그리고 지지할 것을 증명해야 한다. 추가로 감독은 안수를 위한 자격(¶¶304, 330, 335, 336)에만 제한되지 않는 장정 전체를 옹호, 실행, 그리고 지지하는 사람만을 추천할 것을 연회 총무에게 증명해야 한다. 사역부의 적절한 회원을 확보하기 위해서...</p>
--	--

전통주의 플랜 #7 – 철저한 조사 - Par. 635.2h (청원서 90038)

요약: 연회안수사역부가 후보자를 철저히 심사하고 성생활에 관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후보자를 거절할 것을 요구

위헌 - **합법의 원칙**을 위배

총회 전에 제출:

¶635.2.h에 추가함으로 수정:

모든 후보자의 안수사역에 관한 적성을 검사하며 특히 그들이, (1) 본처목사로, (2) 준회원으로, (3) 정회원으로 선출될 수 있는지 그 적성에 관하여 철저히 조사한다. 연회안수사역부는 장정에 정의한 대로, 소셜 미디어를 포함해서 후보자가 동성애를 행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심사를 해야만 한다. 사역부는 그러한 심사가 이루어졌음과 그 결과를 증명해야만 한다. 사실상 후보자가 동성애를 행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사역부는 파송하거나 안수하기 위해 연회 비공개 교역자 회의에 그 후보자를 추천해서는 안 된다.

총회에서 승인:

수정되지 않음

전통주의 플랜 #8 – 연회안수사역부의 구성- Par. 806.9 (청원서 90039)

요약: 연회가 후보자를 증명하고 불이행 시의 결과

위헌 - **합법의 원칙**을 위배

총회 전에 제출:

¶ 806.9의 결론을 수정:

모든 연회는 감독이 동성애자의 결혼과 안수에 관련된 장정을 옹호, 실행, 지지하는 자들만 연회안수사역부의 회원으로 추천한 것을 증명해야만 한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재무행정협의회는 연합감리교회의 모든 기금을 보류하고 해당 연회에 연합감리교 십자가 및 불꽃 로고 쓸 권리를 취소한다.

총회에서 승인:

수정되지 않음

전통주의 플랜 #9- 연회안수사역부의 구성 - Par. 613.19 (청원서 90040)

요약: 연회가 후보자를 증명하고 불이행시의 결과

위헌 - **합법의 원칙**을 위배

총회 전에 제출:

¶ 613.19의 결론을 수정:

모든 연회는 감독이 동성애자의 결혼과 안수에 관련된
장정을 옹호, 실행, 지지하는 자들만 연회안수사역부의
회원으로 추천한 것을 증명해야만 한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재무행정협의회는 연합감리교회의 모든 기금을
보류하고 해당 연회에 연합감리교 십자가 및 불꽃 로고 쓸
권리를 취소한다..

총회에서 승인:

수정되지 않음

전통주의 플랜 #11 – 처벌의 의무화 - Par. 2711.3 (청원서 90042)

요약: 동성결혼을 주례해서 유죄 판결을 받은 목회자에 대한 처벌을 의무화

합헌

총회 전에 제출:

¶ 2711.3의 처벌을 다음과 같이 수정:

¶ 2711. 재판부의 권한

3. 벌칙 – 유죄 판결이 났을 경우 – 어떤 벌칙을 적용할 것인가에 관하여 변호인은 계속 증언하며 변론할 수 있다. 재판부가 벌칙에 관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적어도 위원 7명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유죄가 확정되면, 재판부는 피고인을 고백교인 명부에서 삭제하거나, 피고인의 연회원 신분을 정지시키거나, 위임, 안수, 또는 성별한 것을 무효화하거나, 피고인으로 하여금 교회의 직분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또는 이보다 덜한 처벌을 정할 권한이 있다. ¶ 2702.1 (b) 또는 (d)에 의거한 동성 결혼식을 주례하거나 동성 결혼을 축하하는 예식을 집례로 유죄 판결이 난 경우는 제외되며, 재판부는 아래보다 가벼운 처벌을 주거나 바꿀 권한이 없다:

a) 첫 번째 위반 - 1년의 무급 직 무정지.

b) 두 번째 위반 - 연회 회원 신분 정지, 안수, 그리고 성별한 것을 무효화

재판부에서 정한 처벌은 재판부에서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즉시 효력을 발생합니다.

총회에서 승인:

수정되지 않음

전통주의 플랜 #12 – 목회자의 자격- Par. 304.5 (청원서 90043)

요약: 연회안수사역부는 성생활에 관련된 기준을 지키지 못하는 후보자를 조사하고 승인하는 것을 금지

합헌

총회 전에 제출:

¶ 304.5를 다음과 같이 수정:

5. 인허, 안수 또는 연회 회원 자격에 관한 모든 투표에 있어서, 여기에 규정된 요건들을 다만 최저 기준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투표권을 가진 사람들은 원입자들의 은사, 하나님의 은총의 증거, 또한 교회 선교를 위한 장래의 유용성에 근거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투표하기를 기대한다. 지방안수위원회와 연회안수사역부는 그 사람에 대한 충분하고 철저한 조사와 검토에 근거해서 장정 ¶304.1-3의 안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인허, 파송 또는 안수 후보자로 승인하거나 추천하지 않는다. 연회 비공개 교역자 회의를 주재하는 감독은 그러한 자격이 없는 후보자를 규칙에 위배되며, 적합하지 않다고 결정을 내려야 한다.

총회에서 승인:

수정되지 않음

전통주의 플랜 #13 – 고발 취하 절차- Par. 362.1e (청원서 90044)

Summary: 원고와 정보를 고유할 것을 의무화

합헌

총회 전에 제출:

¶ 362.1e and ¶ 413.3d의 고발 취하 절차를 다음과 같이 수정:

¶ 362.1 e) 고발의 이송 또는 취하 – 서명한 고발장을 접수하면 감독은 90일 이내에 관리적 대응 과정을 시작한다. 만일 고발을 접수한 지 90일 이내에 위에 명시한 절차에 따라 어떤 해결점을 찾지 못하면, 감독은 이를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법적인 근거나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한 감리사회의 동의를 얻어 그 이유를 서면으로 적어 이를 기각하고, 그 사본들을 교역자의 파일에 철하여 두고 원고에게 나눠주고, 또는

(2) 이를 교회 측 변호인에게 고소하도록 이송한다.

¶ 413.3 d) (i) 만일 관리적인 대응이 사안을 해결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면, 관리적인 대응을 담당할 감독과 관리적인 대응 과정을 위하여 임명된 감독협조위원회의 두 위원(¶ 413.3)은 해결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는지, 이를 지켜보아야 한다. 만일 이 관리적인 대응이 해결을 보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지역감동회 회장이나 서기는 법적인 근거나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한 그 사안을 지역감동회와 감독협조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기각하여 그 이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사본 하나를 해당 감독 파일에 철하여 두고 원고에게 나눠주며, 혹은 ¶413.3e에 따라 사안을 행정적 고발로 간주하여 감독협조위원회에 회부하든지, 또는 이를 ¶2704.1에 따라 교회 측 변호인에게 의뢰하여 조사위원회로 하여금 처리하게 한다.

총회에서 승인:

수정되지 않음

전통주의 플랜 #14 – 합의 과정 - Par. 2701.5 (청원서 90045)

요약: 합의 과정에 손상을 명시할 것과 다시는 위법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약속에 포함

새로운 두 번째 문장은 위헌 - 헌법 111 20과 58을 위반

총회 전에 제출:

¶¶ 362.1, 413.3c, 2701.5, 2706.5.c.3의 합의 과정을 다음과 같이 수정:

¶ 362. 고발처리 절차—

... 합의과정이란, 가능한 그릇된 것을 바로잡아 진정으로 책임을 지고 관계된 모든 사람을 치유함으로써 사람들이나 공동체에 끼친 손상을 치유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을 뜻한다. 합의 과정은 확인된 모든 손상을 명시해야 하고, 고소에 관련된 교회와 상대방이 이런 손상을 어떻게 언급했는지 명시해야 한다. 장정의 조항들을 명백하게 위법하는 행동을 피고소인이 취한 경우, 합의 과정은 위법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야 하며 그 약속만으로 제한되지는 않는다...

¶ 413. 감독에 대한 고발—

3. c) 관리적 대응은 합의 과정을 모색하는 과정을 포함할 수 있으며... 합의 과정은 확인된 모든 손상을 명시해야 하고, 고소에 관련된 교회와 상대방이 이런 손상을 어떻게 언급했는지 명시해야 한다. 장정의 조항들을 명백하게 위법하는 행동을 피고소인이 취한 경우, 합의과정은 위법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야 하며 그 약속만으로 제한되지는 않는다.

¶ 2701. 5. A 사법처리에서의 합의과정— 합의 과정이란, 가능한 그릇된 것을 바로잡아 진정으로 책임을 지고 관계된 모든 사람을 치유함으로써 사람들이나 공동체에 끼친 손상을 치유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을 뜻한다. 합의 과정은 확인된 모든 손상을 명시해야 하고, 고소에 관련된 교회와 상대방이 이런 손상을 어떻게 언급했는지 명시해야 한다. 장정의 조항들을 명백하게 위법하는 행동을 피고소인이 취한 경우, 합의 과정은 위법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야 하며 그 약속만으로 제한되지는 않는다...

¶ 2706.5 c) 위원회가 타당한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였을

총회에서 승인:

수정되지 않음

경우 또는 다른 결정

(3) 교회 측 변호인과 피고인 측 변호인의 건의가 있으면, 심문위원회는 합의 과정을 모색하기에 적절하다고 인정되어질 때, 그 사안을 주재감독에게 회부할 수 있다. . . . 합의 과정은 확인된 모든 손상을 명시해야 하고, 고소에 관련된 교회와 상대방이 이런 손상을 어떻게 언급했는지 명시해야 한다. 장정의 조항들을 명백하게 위법하는 행동을 피고소인이 취한 경우, 합의 과정은 위법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야 하며 약속만으로 제한되지는 않는다. 만일 이 문제의 해결이 사역자의 자격에 변화를 가져오게 되면. . .

전통주의 플랜 #15 – 합의 과정 - Par. 2701.5 (청원서 90046)

요약: 고소인이 합의 과정에서 참여할 것을 요구

합헌

총회 전에 제출:

¶¶ 362.1(c), 413.3(c), 2701.5, and 2706.5(c)3에 아래의 문장을 추가함으로써 수정: 어느 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든지 간에, 고소인(들)이 합의 절차에 참여해야 하며, 합의안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고소인(들)이 동의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 2701.5 and 2706.5(c)3에 고소인을 더하여 수정.

¶ 362. 고발 처리 절차—1. 연합감리교회 연회에서의 안수와 회원권은 하나의 성스러운 신뢰를 뜻한다. . .

c) 합의 —관리적인 대응 방법은 관련된 모든 사람이 만족스러운 해결 또는 합의에 이르게 하는. . . 합의 과정은 대응, 고발, 또는 사법 처리 과정에서 어느 때나 시작할 수 있다. 어느 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든지 간에, 고소인(들)이 합의 절차에 참여해야 하며, 합의안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고소인(들)이 동의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만일 합의에 도달하게 되면, 합의 확인과 조건을 포함한 합의서에 관련자들은 서명하고, 제삼자에게 알릴 모든 사항에 대하여서도 합의를 보아야 한다. 관련된 모든 사람이 동의한 합의는 고발을 최종적으로 종결한 것으로 간주한다.

¶ 413. 감독에 대한 고발

3. ¶ 413.2에 명시된 고발장을 접수하면

c) 관리적 대응은 합의를 모색하는 과정을 포함할 수 있으며. . . 어느 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든지 간에, 고소인(들)이 합의 절차에 참여해야 하며, 합의안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고소인(들)이 동의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만일 합의에 도달하면, 조건을 포함한 합의서에 관련자들은 서명하여야 하며, 제삼자에게 알릴 모든 사항에 대하여도 합의를 보아야 한다. 그러한 해결 합의서는 이 과정의 단계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에게 전달되어 합의서를 따라 다음 단계의 행동을 취하게 하여야 한다.

총회에서 승인:

수정되지 않음

¶ 2701.5. 사법처리에서의 합의 과정—

합의는 사람들이나 공동체에 준 손상을 치유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어, 가능한 한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며 관계된 모든 사람에게 치유의 손길을 뻗춤으로써 진정한 책임성을 갖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 . 교회 측 변호인이 사안을 사법적 고소로 간주하여 심문위원회에 회부한 후에, 합의를 모색하기 원한다면, 교회 측 변호인과 피고인과 피고인측 변호인을 포함한 당사자들은 비밀보장에 관하여 합의한 내용을 포함, 절차에 관하여 서로 서면으로 합의해야 한다. 어느 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간에, 고소인(들)이 합의 절차에 참여해야 하며, 합의안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고소인(들)이 동의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만일 합의가 이뤄지면, 조건을 포함한 해결합의서에 관여한 사람들이 모두 서명하여야 한다. 관여한 사람들은 제삼자에게 알릴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여야 한다. 만일 그 해결이 교역자 신분에 변화를 가져오게 되면, 이 노출에 관한 합의는 재허입에 필요한 장정 상의 요구 사항을 막지 못한다.

¶ 2706.5. 고소장과 소인, 심의, 투표, 및 회부

c) 위원회가 타당한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였을 경우 또는 다른 결정

(3) 교회측 변호인과 피고인측 변호인의 건의가 있으면, 심문위원회는 합의를 모색하기에 적절하다고 인정될 때, 그 사안을 주재감독에게 회부할 수 있다. 감독은 그 해결을 위한 과정을 시작하여야 하며, 이때 자격 있고 독립적이며 제삼자가 되는 진행자나 중재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러한 회부는 ¶ 2701.2d에 의거, 사안을 취하한다거나 또는 이중위험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교회 측 변호인과, 피고인과, 피고인 측 변호인을 포함한 해당 관련자들을 비밀보장 합의서를 포함하여 과정을 요약한 합의서에 동의하여야 한다. 어느 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간에, 고소인(들)이 합의 절차에 참여해야 하며, 합의안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고소인(들)이 동의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만일 합의에 도달하면, 합의 확인과 조건을 포함한 합의서에. . . .

전통주의 플랜 #16 – 교회의 상소- Par. 2715.10 (청원서 90047)

요약: 교회가 사법위원회에 법의 오류를 상소할 권리

합헌

총회 전에 제출:

¶ 2715.10의 상소 절차를 다음과 같이 수정:
¶ 2715. 상소 절차—개요
10. 교회 측은 재판부의 진위에 대한 결정에 대해 상소할 권리가 없다. 교회는 심문위원회에 그다음은 사법위원회에 교회 재판부의 판결들에 합리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터무니없는 교회법이나 행정상의 오류를 근거로 교회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상소권을 가진다. 심문위원회 또는 사법위원회가 이 조항에 따라 교회 법이나 행정에 중대한 오류를 발견할 경우, 그 재판의 근거에 대한 진술과 함께 새로운 재판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은 이중의 위험이 될 수 없다. ¶ 2702에 의하여 조사는 하였으나 재판은 하지 않은 경우, 터무니없는 교회법 또는 행정상의 오류를 범한 것에 대하여 교회 측 변호인이 지역총회 혹은 해외지역총회의 상소위원회에 그리고 그다음 사법위원회에 상소할 수 있다. 고소장을 입증하지 않기로 한 심문위원회의 결정은, 그 자체만으로는 터무니없는 교회법 또는 행정상의 오류를 범한 행위로 성립되지 않는다. 상소위원회 혹은 사법위원회가 이 부분에서 터무니없는 교회법 또는 행정상의 오류를 발견하게 되면, 새로운 심문을 위하여 그 사안을 재판부에 환송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상소위원회는 그러한 결정을 하게 된 근거에 대한 진술서를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돌려보낸다. 이것은 이중위험이 되어서는 안 된다.

총회에서 승인:

수정되지 않음

탈퇴 - 새로운 Par. 2553 (청원서 90066)

요약: 교회가 교단을 탈퇴하기 위한 조건들을 설립

위헌 - ¶ 33을 위반

총회 전에 제출:

2019 특별총회 종료와 함께 효력을 발생하며, 장정 6장 교회의 재산에 새로운 VIII 절인 인간 성행위에 관련된 문제로 지역교회의 탈퇴를 더 하였고, 다음과 같이 새로운 ¶ 2553을 추가 함으로써 수정:

¶ 2553. 인간 성행위에 관련된 문제로 지역교회의 탈퇴.

1. 근거 - 2019 특별총회에서 결의되고 채택됨으로써 동성애 관계나 스스로 동성애 관계에 있음을 밝힌 사람의 결혼과 안수에 대한 장정의 요구 사항 및 규정의 변경에 관련된
혹은 특별총회의 채택에 뒤따르는 연회의 조치나 조치하지 않는 것에 대해 양심의 이유로 개 교회는 이 단락의 규정에 따라서 교단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제한된 권한을 갖는다.

2. 탈퇴 기간 - 이 청원서가 승인되면, 청원서의 효력 아래 탈퇴하려는 교회는 2023년 12월 31일 이전까지 탈퇴 과정을 마쳐야 한다. 2023년 12월 31 이후에는 청원서의 효력이 만료된다.

3. 연합 감리 교회와의 초기 접촉 - 지역 교회의 임원회가 이 단락에 따라서 연합감리교회로부터 탈퇴를 고려하기로 결정하면, 이 과정을 시작하기 위해 그 교회 임원회는 지방회 감리사에게 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방회 감리사는 그 교회가 연합감리교회 내에서 혹은 탈퇴 해서 독자 생존의 가능성이 있는지 연구 결과를 감리사에게 보고할 특별위원회를 ¶ 213에 따라 임명한다. ¶ 213.2 및 ¶ 213.3의 조항들은 적용되지 않는다. 조사할 당시 그 교회가 독자생존의 보장된다면, 감리사는 ¶ 2553.1에 기초해 연합감리교회와의 분리 여부만을 유일하게 결정할 목적으로 ¶ 248에 따라 교회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그 교회가 독자생존이 불가능할 경우, 감리사는 ¶ 2549에 의거하여 폐쇄를 권고하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하며, 개 교회의 모든 재산은 ¶ 2549의 규정에 따라 연합감리교회에 남아 있어야한다.

4. 의사 결정 과정 - 교회총회는 ¶ 248에 따라 진행되어야

총회에서 승인:

다음과 같이 소수 보고서의 대체로서 주요 동의안을 수정하였다 :

청원서 # 90066 (ADCA, 205쪽)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다 :

1. 2553.3 전체를 삭제.
2. 2553.5의 첫 번째 문장에서 "주재 감독"을 "재단이사회로" 대체.
3. 2553.5g의 첫 문장을 삭제.
4. 2553.5g의 마지막 문장을 다음과 같이 바꾸어 변경: "지급은 탈퇴 유효일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5. 2553.5c의 전체 내용을 삭제하고 번호를 다시 매긴다.

하며, 감리사가 교회총회를 소집한 후로부터 120일 이내에 개최되어야 한다. ¶ 246.8의 규정에 추가하여, 교단의 탈퇴를 위한 교회총회의 시간과 장소에 대해서 교회 전체 입교인에게 전자통신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공고하도록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연합감리교회로부터 탈퇴 결정은 교회총회에 참석한 입교인의 3분의 2 이상 다수 표결에 의해 승인되어야 한다.

5. 연합감리교회로부터 탈퇴 결정 이후 진행 - 교회총회가 연합감리교회로부터 탈퇴하기로 표결한 경우, 해당 연회의 주재 감독은 감리사회, 연회재무담당, 연회혜택담당, 연대사역 총무, 연회 법률고문 등의 조언과 함께 탈퇴에 필요한 계약조건이 제정되어야 한다. 탈퇴의 효력일 포함된 계약조건은 교인들을 대행해서 연회와 탈퇴 교회의 재단이사회 사이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동의서로 기록되어야 한다. 이 동의서는 다음 조항들과 일치해야 한다:

a) 탈퇴 합의에 대한 기준 조건. 재정행정협의회는 ¶ 807.9에 명시된 바와 같이 연합감리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단락에 따른 탈퇴 동의에 관한 표준 양식을 만들어야 한다. 이 합의서는 그것으로부터 자산을 내어주지만, ¶ 2501의 유효성 및 적용 가능성에 대한 승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연회는 이 단락의 기준 조건과 부합되지 않는 추가적인 기준 조건을 더할 수 있다.

b) 분담금. 개 교회는 탈퇴 시부터 12개월 전까지 지급되지 않은 분담금과 추가적인 12개월분의 분담금을 지급해야 한다.

c) 보조금. 탈퇴 시로부터 5년 이내에 그 교회가 연회나 연회 기관으로부터 받은 모든 보조금을 상환해야 한다.

d) 자산. 탈퇴하는 교회가 실물 혹은 개인의 유·무형 자산은 보유할 권한을 가질 수 있다. 자산의 이전은 탈퇴 이전에 이뤄져야 한다. 소유권과 법적 절차를 위한 모든 비용은 탈퇴하는 교회가 부담한다.

e) 연금부채 - 탈퇴하려는 교회는 연회가 가진 미지급 연금 부채의 총액에서 그 교회에 해당하는 금액을 탈퇴 시에 지불해야 한다. 은급의료혜택부는 상업 연금회사가 쓰는 시장 지수를 이용해서 연회의 미지급 연금 부채의 총액을 책정하고, 그 연회는 탈퇴하는 교회의 해당 액을 책정하게

된다.

f) 기타 부채. 개 교회는 탈퇴 전에 다른 모든 채무, 용자 및 부채를 갚거나 새로운 단체에 양도해야한다.

g) 지불 조건. ¶ 2553.5. b, c 그리고 e와 관련된 금액을 연회에 지불할 것을 조건으로 규정한다. 지급 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h) 탈퇴 교회가 은급의료혜택부의 연금 계획을 계속 유지. 연합감리교회는 그 교회가 분명히 반대 결의하지 않는한 ¶ 2553에 따라 탈퇴하는 교회가 웨슬리 신학과 전통과 감리교 뿌리를 토대로 한 연합감리교회와 공통의 종교적 유대와 신념을 계속 가질 수 있다고 믿는다. 이처럼, ¶ 2553에 따라 탈퇴하는 교회는 해당 계획의 적용 조건에 따라 ¶ 1504.2에 기초해 은급의료혜택부를 통해서 직원 혜택 프로그램을 계속할 수 있다.

i) 탈퇴하는 지교회가 협약에 따른 모든 기금을 해당 연회에 지불했고, 이 조항의 규정 사항들에 따라서 탈퇴의 결과로 인한 연합감리교회에 대한 채무 또는 청구가 없다면, 해당 연회는 연합감리교회의 장정의 다른 조항과 ¶ 2501 에 근거해 일반적으로 신탁조항이라고 언급되는 모든 구속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이다.